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공고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인증서)

□ 추진목적

-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체계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물량 확대 및 가격 안정화 등 기업의 RE100 이행 부담 완화
- 본제도 추진(27.上 잠정) 전,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체계 구축

□ 운영기간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11월 27일

□ 운영체계

< 자가설비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운영체계(안) >



- **(참여설비선정)** 공고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설비(300개 이내) 선정
 - * 단일 사업자가 다수 설비를 신청할 경우, 5개 설비까지 신청 가능
 - 공고를 통해 설비소유자가 제출한 서류 기반 REGO발급·거래 시스템 내 설비 정보 등록 및 계정 생성(예공단)
 - *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설비 정보, 발전량 및 REMS 연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REGO발급)** 설치비 비율에 따라 정부·지자체·설비소유자별 발급
 - 1MWh당 1REGO로 발급
 - '25.1월 이후 발전된 발전량을 대상으로 발급(시범사업에 한함)
 - 설치비 보조 비율에 따라 정부·지자체·설비소유자 REGO로 발급
 - 시범사업에서 발급된 REGO는 본제도에서 활용가능토록 검토 예정
- **(REGO거래)** 거래 참여 수요기업(40개 이내) 선정 및 모의 거래
 - 공고를 통해 REGO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기반 REGO 발급·거래 시스템 내 기업 정보 등록 및 계정 생성(예공단)
 - 매주 화요일 10시~16시에 열리는 REGO 거래시장에서 거래
 - 시범사업에서는 금전거래 없이 REGO 거래(모의거래 방식)
 - 거래된 REGO 내역은 시범사업 종료 후 삭제 예정
 - * 다만, 본제도 참여 시 시범사업에서 거래된 REGO 내역을 기반으로 우선 매매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예정
 - REGO 거래단가는 시장에서 결정하며, 매수자 중심 시장(매수시장) 및 매도자 중심 시장(매도시장)을 순차적으로 운영
 - * (1~4주차) 매수시장, (5~8주차) 매도시장, (9주차~) 매수, 매도시장 동시 운영
- **(확인서 발행)** REGO 거래 완료 후 신청 시 필요한 물량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모의 발행(수요기업에만 해당)
 - * 단, 시범사업 내 발급된 확인서는 RE100 실적으로 불인정(시스템 상 조회만 가능)

2 공고 개요

□ 시범사업 참여자격

- (설비소유자)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를 소유한 사업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

- ① '22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았으며, REMS*에 기 연계되어 있는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 : 재생E 보급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객관적 발전량 확인을 위해 REMS-REGO 연계 필요

- ② 본 공고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고장 이력 없이 정상 가동 중인 설비
- ③ 설치 용량이 최소 10kW 이상인 설비

- (수요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 참여기업*

*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C 구매 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력이 1건 이상 되어야 함(단순 시스템 등록기업 참여 불가)

□ 시범사업 참여혜택

○ 설비소유자

- 시범사업의 설비확인 및 REGO 발급내역은 향후 본제도 추진 시 활용가능토록 검토 예정

* 본제도 시행시 시범사업 발급내역 기반 우선 매칭 검토(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 잠정)

** 단, REMS 조작, 허위사실 신고 등에 따른 REGO 오발급 문제 발생시 REGO 전량 회수 및 본제도 참여 불가

- 시범사업에서 거래된 REGO 내역을 기반으로 본제도 추진 시 RE100 수요기업에 우선 판매 기회 부여

○ 수요기업

- 시범사업에서 거래된 REGO는 본제도 추진 시 우선 거래 가능
- 본제도 추진 시 정부 REGO 우선 구매 기회 부여

□ 제출서류

※ 전자파일로만 접수 가능(우편 접수 불가)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협약서 등 첨부서류 일체

<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제출 서류 목록 >

구분	번호	첨부 서류
설비 소유자	1	[첨부2]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첨부3] 시범사업 참여 협약서 1부
	3	[첨부4]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 비율 확인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일반사업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서 1부
	7	사용전검사(점검) 확인증 1부
	8	(해당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1부
수요 기업	1	[첨부2]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첨부3] 시범사업 참여 협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일반사업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필요시 첨부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처 : 재생정책처 K-RE100운영팀(reuse@energy.or.kr)

□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6년 7월 20일 ~ 8월 4일 16:00까지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안) ¹⁾
공 단	공 고	'26년 7월 20일~
수요기업, 설비소유자→공단	서류접수	~'26년 8월 4일
공 단	참여기준 적격여부 확인	'26년 8월 5~7일
공단→수요기업, 설비소유자	최종선정 ²⁾ , 선정결과 안내	'26년 8월 7일
수요기업↔설비소유자	시범사업 참여	'26년 8월 10일~ '26년 11월 27일

1)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최종선정 후 자진 철회 등에 따라, 후순위 선정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준

- 제출 서류 기반 참여 자격 적격 여부 검토 후 설비 300개 이내 및 수요기업 40개사 선정
- 설비 선정기준
 - ❶ 저탄소 모듈 및 국산 인버터를 사용한 경우
 - ❷ (❶조건이 동일할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큰 순
 - ❸ (❷조건이 동일할 경우) 사용전 검사(점검)일이 빠른 순
- 수요기업 선정기준
 - ❶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누적 REC 구매량)이 많은 순
 - ❷ (❶조건이 동일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전체 이행수단)이 많은 순
 - ❸ (❷조건이 동일할 경우) 최초 재생에너지 사용 시점이 오래된 순

4 기타 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본제도 참여 불가
- 설비소유자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및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인 경우 시범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확인될 시 선정을 취소함
-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는 정부 및 국회 등의 요구자료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고를 통해 선정된 설비 외에 지자체와의 실증을 통한 설비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상세문의 : 재생정책처 K-RE100운영팀(052-920-07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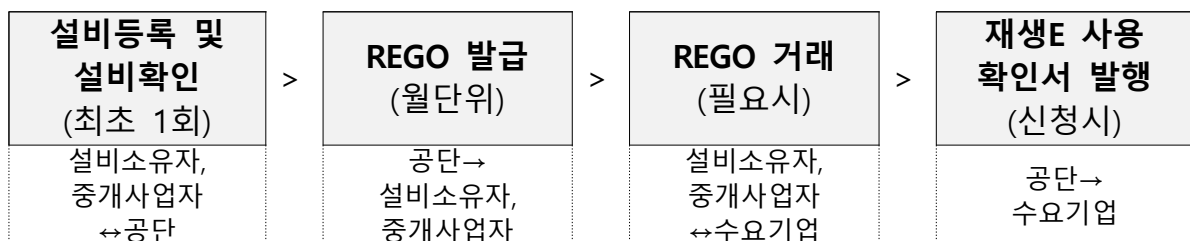
첨부1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 · 거래 체계(안)

* 본제도 세부계획은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대상설비) 정부보조 자가설비 및 민간 자가설비 중 ▲REMS 연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설비
- ☐ (시스템) 기존 시스템(재생E 사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REMS 연계로 ▲설비확인, ▲REGO 발급 및 ▲거래, ▲재생E 사용확인서 발급
- ☐ (설비확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준용하여 설비 시공, ▲보급지원사업 설치확인 기준 준용 설비 확인
- ☐ (발급) ▲1MWh당 1REGO(월단위)*, ▲인증서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년, ▲설치비 비율에 따라 정부**·지자체·설비소유자 REGO로 발급
 - * REMS를 통한 월단위 발전량을 대상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발전량은 다음달 이월
 - ** 정부 REGO는 국가REC 판매요건을 준용하여 판매 검토 예정
- ☐ (거래) 플랫폼 시장 및 장외시장을 통해 수요기업에 판매(현물, 계약), 원하는 경우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 가능
 - * 설비확인, REGO발급·거래, REMS 유지보수 등 전주기 관리 가능 기업·기관·지자체로, 일정 규모 이상 설비를 모집하여 참여(시범사업 기간 별도 요건 마련)
- ☐ (확인서) REGO 거래내역 기반 수요기업 신청시* 발급
 - * REGO 유효기간 내 수요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청 및 발급 가능
- ☐ (시범사업) 거래 가능 물량 예측, 가격 변동성 확인 및 중개거래 필요성, 운영 기준 검토 등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자가설비 REGO 발급·거래 운영체계(안)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양식)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RE100 수요기업) >

[illegible]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설비소유자) >

신청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E-mail :	
공단 참여사업	☐ 건물지원 ☐ 융복합지원 ☐ 지역지원 ☐ 기타()			
발 전 원	☐ 태양광 ☐ 풍력 ☐ 바이오 ☐ 기타 ※ 전력 생산원만 가능(지열의 경우 열원은 불가하며 지열발전만 가능)			
사 업 비 (통신연계비 포함)	총 사 업 비	천원	국가보조비	천원
	지방보조비	천원	자 부 담 금	천원
REMS 연계 C I D 번 호	※ 여러개일 경우 모두 기재			
설 비 용 량 (소수점이하 기재)	() kW			
'25년(추정)발전량	() kWh			
설 치 장 소	※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도로명주소 기재			
설 치 확 인 일	년 월 일			
사 용 전 검 사 (점 검) 일	년 월 일			
탄소검증코드 (해당시)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기업) (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자(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2. (일반사업자) 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서 1부. 4. 사용전검사(점검) 확인증 1부. 5. (해당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1부. 6. 시범사업 참여 협약서 및 무상지원비율확인서 각 1부. 끝.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 협약서(설비소유자)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위 기업은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참여 취소, 시범사업에서 발급되는 REGO 전량 회수 및 본제도 참여 불가 등 한국에너지공단(이하“공단”)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 가. 참여기업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나. 참여기업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단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 참여기업은 공단의 관계법령,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범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참여기업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공단이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
- 다. 참여기업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협의 및 피드백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라. 참여기업은 시범사업의 목적상 시범사업을 통하여 공단에 대한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단의 폭넓은 재량에 따라 시범사업이 중단, 대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협조한다.

2. 관련서류 보관 등

참여기업은 시범사업 관련하여 접수하거나 작성한 서류 등을 시범사업이 종료 후 5년까지 보관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상의 조치

- 가. 공단은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업을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공단은 참여기업이 시범사업 공고문 및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 및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등 제외 동의

참여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및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5.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참여기업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본제도 도입 목적으로 제출 정보를 공단이 수집·이용하는 점과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 등이 제반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의 요구자료 제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6. 시범사업의 제재조치와 중단 등

- 가. 참여기업이 시범사업 진행에 있어 착오, 기망,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REGO를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공단은 참여기업에 발급된 REGO의 전량을 즉시 회수하고 참여기업의 본제도 참여 불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그 외에 이로 인하여 공단 또는 시범사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나.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범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약약하며, 이 경우 사유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 공단에 해당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유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의 시정 가능성 등을 불문하고 참여기업은 즉시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시범사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 1) 시범사업 기간 중 폐업하거나, 중대한 영업의 영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 시범사업 기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러한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 3) 관계 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배출권 할당기업 및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등 제외 대상임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 5) 본 약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협조의무를 포함함), 공단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러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6) 기타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공단은 가~나목에 따른 확인 점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재량에 따라 시범사업의 참여 제한 및 본제도에 대한 참여 불가를 통보할 수 있다.
- 라. 공단은 나목 각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유의 시정 가능성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참여기업을 시범사업에서 즉시 제외시킬 수 있다.
- 마. 참여기업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REGO를 즉시 전량 반환하여야 하고, 그 외에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료 등 일체를 반환하거나 공단의 허가 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7. 준용

이 약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운영지침 및 그 밖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26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 협약서(RE100 수요기업)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위 기업은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참여 취소 및 참여 혜택 미부여 등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 가. 참여기업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나. 참여기업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단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 참여기업은 공단의 관계법령,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범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참여기업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공단이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없이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
- 다. 참여기업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협의 및 피드백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라. 참여기업은 시범사업의 목적상 시범사업을 통하여 공단에 대한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단의 폭넓은 재량에 따라 시범사업이 중단, 대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협조한다.

2. 관련서류 보관 등

참여기업은 시범사업 관련하여 접수하거나 작성한 서류 등을 시범사업이 종료 후 5년까지 보관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상의 조치

- 가. 공단은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업을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공단은 참여기업이 시범사업 공고문 및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참여기업은 시범사업의 특성상 시범사업에서 실질적인 금전거래 없이 모의가격 투찰 방식

으로 참여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서 구매한 REGO는 실제 RE100 실적
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5.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참여기업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본제도 도입 목적으로 제출 정보를 공단이 수집·
이용하는 점과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 등이 제반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의 요구자료 제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6. 시범사업의 제재조치와 중단 등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범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약하며,
이 경우 사유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 공단에 해당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고 REGO 전량 반환
및 시범사업에서 즉시 제외되어야 한다.

- 가. 시범사업 기간 중 폐업하거나, 중대한 영업의 영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나. 시범사업 기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
되거나, 이러한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라. 본 확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협조의무를 포함함), 공단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러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마. 기타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준용

이 확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운영지침 및 그 밖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26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설비소유자)

☐ 신청자명 :

☐ 소재지 :

☐ 총사업비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정부 무상지원금 : 천원

- 지자체 무상지원금 : 천원 (지자체명 :)

위 발전설비는 국가로부터 받은 무상지원금 지원비율이 ()%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무상지원금 지원비율이 ()% 임을 확인합니다.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범사업 참여 중지 및 본 사업 참여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명 :

대표자 : (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1. 본 확인서와 함께 무상지원금 지원비율에 대한 증빙서류(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공문 등) 제출 필수
2. 지원비율(%)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하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있는 경우는 기술료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지원금으로 기재
3.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설비의 무상지원금 지원비율 산정식은 아래와 같음
무상지원금 지원비율 = {(무상지원금÷내용연수*)} ÷ {(총사업비÷내용연수*)+연료비}

*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상한을 적용